

[재무위험관리사 1과목 1단원 금융통계학 완벽 핵심정리]

1. **조건부확률**: 어떠한 사건 A가 발생한다는 조건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함.($=P(B | A)$)
$$= \frac{P(A \cap B)}{P(A)}$$

2. **확률의 곱셈법칙**: 확률의 곱셈법칙은 조건부확률 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됨. $P(A \cap B) = P(A) \cdot P(B | A)$ 또는 $P(A \cap B) = P(B) \cdot P(A | B)$.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함.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P(A \cap B) = P(A) \cdot P(B)$ 가 성립하며, $P(A | B) = P(A)$ 및 $P(B | A) = P(B)$ 등식이 성립함.

3. **기대값(평균)**: 각 변수의 확률값에 각 변수값을 곱하여 산정함. 즉, $E(X) = \sum_{i=1}^n X_i \cdot P(x)$.

4. **기대값의 특징**: $E(a \cdot X) = a \cdot E(X)$, $E(X+Y) = E(X) + E(Y)$, $E(X \cdot Y) = E(X) \cdot E(Y)$, $E(a) = a$

5. **분산**: 모집단의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값. $V(X) = E(X^2) - \{E(X)\}^2$. 모분산은 분모를 모집단의 크기 N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표본분산은 표본의 크기 (n-1)을 분모로 나누어 계산함

6. **분산의 특징**: $V(a) = 0$, $V(a \cdot X) = a^2 \cdot V(X)$, $V(a+bX) = b^2 \cdot V(X)$, $V(X+Y) = V(X) + V(Y) + 2Cov(XY)$

7. **표준편차의 특징**: $\sigma(a \cdot X) = a \cdot \sigma(X)$

8. **중앙값**: 전체 자료를 크기의 순서로 늘어 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음.

9. **최빈값**: 전체 자료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값

10.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

11. **(+)양의 왜도**: 자료 집단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에 편중되며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트린 모양을 가짐. 자료의 값은 **최빈값<중위수<평균** 순임.

12. **(-)음의 왜도**: 자료 집단이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편중되며 꼬리가 왼쪽으로 길게 늘어트린 모양을 가짐. 자료의 값은 **평균<중위수<최빈값** 순임.

13. **첨도**: 봉우리 부분이 얼마나 뾰족한가를 측정하는 지표임. 정규분포의 첨도는 3이며, 정규분포보다 더 뾰족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를 leptokurtic (첨도>3)이라고 하며, 이때는 자료들이 작은 분산을 보이며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의 경우보다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정규분포보다 덜 뾰족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를 platykurtic (첨도<3)이라고 하며, 이때는 자료들이 큰 분산을

보이며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의 경우보다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14. 정규분포: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n)을 충분히 증가시키면 정규분포 형태를 띰.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종모양.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μ 와 같다. 평균 μ 가 정규분포의 위치를 결정한다. 표준편차 σ 가 곡선(분포)의 모양을 정한다. 즉, σ 의 값이 크면 곡선은 평평해지고, σ 의 값이 작으면 좁고 높아진다. 정규분포곡선 아래와 x축 사이의 면적 = 1(=100%). 확률변수의 범위 : $-\infty < X < +\infty$ (연속확률분포)

15. 표준 정규분포: $Z = \frac{(X_i - \mu)}{\sigma}$ → 편차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 → 어떤 값(X_i)이 평균(μ)으로부터 표준편차(σ)의 몇 배 밖에 위치하는가를 나타냄.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때, 즉 $N(0, 1^2)$.

16. Z Value: 평균과 분산이 다른 값을 가질 때 각각 다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분포 간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화된 점수

17. 이항분포: 평균 $E(X) = np$, 분산 $V(X) = np(1-p)$

18. 공분산: 두 개의 확률변수의 분포가 결합된 결합 확률분포의 분산을 나타내며,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지만 결합정도에 대한 정보는 유용하지 않음. 서로 독립적이라면 두 변수간 공분산이 0임.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공분산의 범위 : $-\infty < \text{공분산} < +\infty$

19. 상관계수: 두 개의 확률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로서 방향성과 선형적 결합 정도를 모두 나타냄. $(= \frac{\text{cov}(X, Y)}{\sigma_X \cdot \sigma_Y})$

20. 카이제곱 분포: 모분산 추론을 위해서 추정량인 표본분산의 분포를 이용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 카이제곱 분포는 0이 될 수 없다. 구간 자체가 0보다 커야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커짐에 따라 정규분포의 모양과 유사해 짐

21. F분포: 2개의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추정할 때 이용하는 분포임. 카이제곱 분포가 단일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내는 반면, F분포는 두 모집단의 분산을 나타냄

22. t분포: 모평균을 추정시, 모분산을 알 수 없고 표본의 크기가 30미만일 경우에는 t분포 사용함

23. 표본 평균: 각각의 표본값을 합한 후 표본의 개수(n)으로 나누어 계산함

24. 표본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값임. 이 때 분모는 표본의 크기 (n-1)을 사용하여 계산함.

24. 모수: 모집단의 특성값(ex: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

25. 통계량(=추정치) : 표본에서 구한 특성값(ex: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

26. 표본 오차(=sampling error):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통해 모집단 전체의 특성 (=모수)추론 함으로서 생기는 오차. 표본 오차는 표본 수에 반비례함 (sampling error = 표본평균 - 모평균)

27. 편의: 추정량의 기댓값 - 모수

28. 불편추정량 : 추정량의 기대값 = 모수 (편의가 0인 추정량)

29. 최소분산 불편추정량 = 불편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최소인 불편추정량

30. 추정치의 3가지 특성: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31. 불편성 : 표본 추정량이 모수값과 일치하는 특성 → 편의가 0 → 불편추정량

32. 효율성 : 여러 개의 불편추정량 중에서 추정량의 분산을 가장 작은 것을 채택하는 특성 → 즉, 변화 폭이 가장 작은 불편추정량 → 최소분산 불편추정량

33. 일치성 : 표본의 크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추정량의 값이 모수와 거의 일치하게 된다는 특성. 불편성은 소표본 또는 대표본에서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일치성은 대표본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임.

34. 체비셰프의 부등호: 임의확률변수에 대하여 확률변수가 이의 기대값의 ($k \times$ 표준편차) 범위 내의 값을 취할 확률은 적어도 $1 - \frac{1}{k^2}$ 이다. 즉, $\mu - k \cdot \sigma \leq X \leq \mu + k \cdot \sigma$ 일 확률은 적어도 $1 - \frac{1}{k^2}$ 이다.

35. 귀무가설: 검정의 대상이 되는 가설로 연구자가 기각하고자 하는 가설

36. 대립가설: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

37. 유의수준(α) : 귀무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1종오류에 대한 최대허용치 = 1- 신뢰수준

38. 1종 오류: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1종 오류 발생할 확률: α)

39. 2종 오류: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2종 오류 발생할 확률 : β)

40. 검정력: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 이를 실제로 기각하는 확률

41. P-value: 검정에 대한 관찰된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α 오류를 범하게 될 확률 값을 의미함.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기각 가능($p < \text{유의수준}$)

42. 단순 회귀분석: 하나의 종속변수 Y와 하나의 독립변수 X의 관계를 분석

43. 다중 회귀분석: 하나의 종속변수 Y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X_1, X_2, \dots, X_n$ 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44. 상관분석: 두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관계식보다 두 변수가 관련된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석방법(=두 변수간 상관관계수 분석)

45. 단순 회귀모형의 특징: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단순 선형 회귀모형을 추정. 최소자승법은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을 추정하는 방법. SSE(sum of squares for error)가 최소일 때가 가장 좋은 회귀식임. $Y_i = \alpha + \beta \cdot x_i + \varepsilon_i$ (α 와 β 는 미지의 모수로 회귀계수라 부르고, ε_i 는 오차항을 나타냄)

46.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가정(4가지) :

- ① **오차항 ε_i 의 평균은 0이다.** 즉, $E(\varepsilon_i) = 0$,
- ② **등분산성:** 설명변수 X 값에 관계없이 피설명변수 Y 의 분산은 일정하다. 이 말은 ε_i 가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는 말과 동일함(즉,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rightarrow V(\varepsilon_i) = E(\varepsilon_i^2) = \sigma^2$
- ③ **정규성:** 설명변수 X 의 고정된 어떠한 값에 대하여 피설명변수 Y 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은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과 같다. $\rightarrow \varepsilon_i \sim N(0, \sigma^2)$
- ④ **독립성:** 피설명변수 Y_i 들은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 이는 피설명변수 간 영향이 없어야 함을 의미. 이 말은 오차간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함 $\rightarrow COV(\varepsilon_i, \varepsilon_j) = 0$

47. 다중 회귀분석 모형의 특징: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 회귀계수 추정함. $Y_i = \alpha + \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k x_{ik} + \varepsilon_i$

48. 다중 회귀 모형의 추가 가정(2가지) :

- ①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야 함.**
- ② **표본을 이루는 관측치(=샘플링 개수)는 독립변수의 수보다 최소한 2 이상 커야 함**

49. 회귀분석 시 가정 위배 시 고려사항

가정	의미	위배시	검사(검정)	대안
정규성	오차는 정규분포를 따름		정규확률그림	변수변환
독립성	오차들간 공분산=0	자기상관 (효율성상실)	Durbin-Watson검정, Von neuman 검정	GLS, AR(p), Cochrane-Orcutt
등분산성	오차의 분산이 동일	이분산성 (효율성상실)	Goldfeld-Quandt 검정, Breusch-pagan 검정, White 검정, 산점도	GLS, WLS, 변수변환
다중회귀 추가가정	설명변수가 상관관계 낮음	다중공선성 (표준 오차 증가)	상관 계수 행렬 검토	변수제거, 표본의 크기 증가

50. 회귀 분석에서 필수 독립변수 제외 시: 불편성, 일치성 상실

51. 회귀 분석에서 불필요한 변수 포함 시: 효율성 상실

52. 회귀 분석에서 변수간 선형관계가 아닌데도 선형으로 가정 시: 불편성, 일치성 상실

53. 결정계수(R^2): 전체 제곱합(SST) 중에서 회귀제곱합(SSR)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0부터 1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귀모형에 적합. $R^2 = \frac{SSR}{SST} = 1 - \frac{SSE}{SST}$ ($R = \rho$ = 상관계수)

54. 수정 결정계수($adj R^2$): 설명변수(X)가 추가될 때마다 결정계수 R^2 값이 증가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됨.

55. 회귀직선의 유의성 검정 2가지 방법:

① t검정: 회귀계수 β 가 피설명변수(y)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

② F검정: 설명변수(x)가 피설명변수(y)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여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

[재무위험관리사 1과목4단원 자기자본건전성 규제내용 완벽 핵심정리]

1. 순자본비율: $\frac{(\text{영업용순자본} - \text{총위험})}{\text{필요 유지 자기자본}} \times 100$

2. 영업용순자본비율: $\frac{\text{영업용순자본}}{\text{총위험액}} \times 100$

3. 영업용순자본 = 자산 - 부채 - 차감항목 + 가산항목

4. 총위험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5.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기: 최소한 일별로 산정

6.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제출시기: 매월말 기준으로 1 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 통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

7. 순자본비율이 100%(영업용순자본비율은 150%) 미만이 된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

8. 경영개선 권고: 순자본비율 50%이상~100% 미만. ex) 부실자산의 처분, 점포관리의 효율화, 경비절감,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9. 경영개선 요구: 순자본비율 0%이상~50% 미만. ex)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요구, 조직의 축소, 점포의 폐쇄, 영업의 일부정지

10. 경영개선 명령: 순자본비율 0%미만. ex)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의 전부 및 일부 양도, 6 개월 이내 영업정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11. 영업용순자본 계산시 차감항목

- ①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신속하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 ②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차감제외> 선급비용(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 경과이자
- ③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채권
<차감제외> 잔존만기 3 개월 이내 대출채권, 채권 보유 후 1 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 주식 관련 사모사채(전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 ④ 특수관계인 채권 등
<차감제외> 이연법인세부채 상당액, M&A 과정에서 취득한 자회사인 증권사 투자지분
- ⑤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차감 제외> 3 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거나 월세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
- ⑥ 대손준비금 잔액
- ⑦ 무형자산(예외: 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차감하지 않음)
- ⑧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 ⑨ 금융투자협회 가입비

12. 영업용순자본 계산시 가산항목

- ①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적용된 대손충당금
- ②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후순위차입금(또는 후순위사채):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상환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차입금
- ③ 금융리스부채: 리스조건에 리스자산에 의한 현물상환이 가능하다는 별도 약정이 있고,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계약해지금은 가산에서 제외
- ④ 자산평가이익
- ⑤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3. 시장위험액의 산정방법

시장위험액 = 주식 위험액 + 금리 위험액 + 외환 위험액 + 집합투자증권 위험액 + 일반상품 위험액 + 옵션 위험액

시장위험을 개별위험과 일반위험으로 구분한 후 합산함

14. 옵션 위험액의 산정 방법

옵션 위험액 = 감마 위험액+베가 위험액+깊은 외가격옵션 위험액

15. 신용위험의 산정 대상

- ㄱ. 예금, 예치금, 콜론
- ㄴ. 증권의 대여 및 차입 => 주식 위험액이 아님에 주의
- ㄷ. 환매조건부 매도 및 환매조건부 매수 => 금리 위험액이 아님에 주의
- ㄹ. 대고객 신용공여
- ㅁ. 채무보증
- ㅂ.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기타 금전채권
- ㅅ. 잔여계약기간이 3 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전세권
- ㅇ.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 옵션 위험액이 아님에 주의
- ㅈ. 사모사채
- ㅊ. 대출채권
- ㅋ. 한도대출약정

16. 운영위험액

회사가 사고·착오·위법부당 행위나 기타 영업여건 악화로 입을 수 있는 손실위험액이 운영위험액임. 운영위험은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과 달리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17. 필요 유지 자기자본의 산정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등록)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가(등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기자본의 경우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필요 유지 자기자본이란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의 70%'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재무위험관리사 1과목5단원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완벽 핵심정리]

1. 내부통제: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임. 일반적으로 내부통제라 하면 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② 재무보고서의 신뢰성, ③ 법규준수를 말한다.

2.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범위보다 작은 개념으로 ① 법규준수 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 준법감시부서, ④ 준법감시매뉴얼, ⑤ 임직원 윤리준칙, ⑥ 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 연수 및 교육 등이 있다.:

3.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 ㄱ. 자산 또는 그 밖의 자원을 투입하여 성과를 산출하는데 있어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손실로부터 회사자산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함
- 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로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업무감사가 있음.

4. 재무보고의 신뢰성

- ㄱ.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것: 여기에는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와 공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되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가 목적적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생산되고 보고되는가 하는 것도 포함
- 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로는 회계감사가 있음

5. 법규준수

- ㄱ. 업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법규뿐만 아니라 사규(윤리 규정 포함)도 포함
- 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로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컴플라이언스 감사 등이 있음

6. 내부통제의 운영주체: 이사회, 경영진, 감사(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최종책임은 이사회에 있음

- ① 이사회: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책임, 지휘 및 통제
- ② 경영진: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설계), 유지 및 운영책임
- ③ 감사(감사위원회): 경영진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미비점을 이사회에 보고함
- ④ 중간관리자, 일반직원: 업무부분별 내부통제절차의 마련, 운영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7. 컴플라이언스 제도란? 법규준수의 정책,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과 기준 절차, 컴플라이언스 조직, 준법감시매뉴얼, 행위준칙, 점검 및 조사, 교육연수 등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 ① 준법기준 제정 및 업무절차 구축(문서화된 규정): 범죄행위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준법기준을 제정하고 업무절차를 구축
- ② 준법담당임원 임명(책임 할당): 준법기준 및 업무절차를 감독하기 위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고위직 준법담당임원을 임명
- ③ 임직원 감독체계 구축(감독제도): 조직 등이 정당한 노력의 실행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종사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종업원에게 실질적인 재량권을 위임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구축
- ④ 교육 프로그램 실시(교육제도): 홍보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종업원에게 효과적으로 준법기준과 업무절차를 전달
- ⑤ 감시·감사체계 및 법규준수자 보호장치 구축(감시/감사 및 신고제도): 범죄행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짜여진 감시 및 감사체계를 활용하고, 종업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포함한 준법기준을 제정
- ⑥ 위반자 처벌체계 구축(처벌제도): 범죄행위 발견의 실패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위반자 처벌체계를 통해 준법기준을 실행
- ⑦ 제도개선체계 구축(제도개선): 발견된 범죄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고 법규위반자의 발견 및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정을 포함하여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8. 감사(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비교

구분	감사(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주요 역할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발견 시 조사하여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
근거 법규	· 상법 및 금융 관련 법률	· 금융 관련 법률
활동 주체	· 감사(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
상호 관계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와 그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 의무
주된 업무	·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내부감사부서장과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승인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법규 준수 여부)에 중점점검 및 조사 · 내부통제기준 준수매뉴얼 작성·배포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 법규준수 관련 직원 교육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운영

9.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②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 ③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 ④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 ⑤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 ⑥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 ⑦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 ⑧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10.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됨

- ①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②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③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업무
- ④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등의 업무
- ⑤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Head of compliance

- a. Head of compliance는 managing director에게 보고
- b. 정책발전의 책임을 부담
 - ㉠ 회사의 업무가 관련 법규, 공식적인 요구, 다른 규제기준, 행위기준에 의해 행동해야 함
 - ㉡ 회사 업무가 높은 윤리기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 c. Head of compliance는 내부절차와 내부통제의 독립적인 검토자
- d. Head of compliance는 정기보고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

12. Compliance Manager

- a. Compliance manager는 head of compliance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음
- b. Compliance manager는 정부 규제와 code of Business Practice 및 내부정책에 대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할 책임을 가짐
- c. Compliance manager는 새로운 투자상품에 대해 협조하고 현존 상품이 새로운 규제에 위배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법적 규제와 윤리의 문제에 대해 다른 부서에 자문

13. Compliance officer

- a. Compliance officer는 compliance manager에게 보고
- b. Compliance officer는 회사의 활동을 법규와 대사하여 분석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수집
- c.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행
- d. 여러 다양한 법규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조력자로서 활동

14.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대상 정보: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래 정보에 대하여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함

가. **미공개중요정보**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15.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대상

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다.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마.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16. 정보교류차단의 일반 원칙

-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됨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17. 컴플라이언스의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음

18. 포트폴리오 운용상 내재되어 있는 이해상충 관계

구분	이해상충 유형	대응방안
임직원↔고객	· 임직원의 개인 투자(상장주식 등) 행위 · 재산상 편의제공 및 수령 행위	·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시에만 거래 가능 ·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승인에 따른 업무 처리
회사↔고객	· 펀드 재산으로 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 ·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에서 보유한 회사가 매수하는 행위 · 의결권의 행사	· 회사가 거래 결정권을 가진 경우 매수 금지(3개월 이내 매수금지) · 자기거래 금지 · 내부 자산운용기준에 따른 투자자의 이해에 반하는 행사 금지/의결권 행사시 준법감시인 승인
고객↔고객	·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 준법감시인의 승인에 따른 정보제공 · 제한적 상황에서만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승인 시에 진행
판매사↔고객	· 투자중개업자의 수익확대를 위해 펀드재산으로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	· 매매회전율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하고 분기별 투자중개업자 점검
중개업자↔고객	· 펀드재산으로 펀드판매나 조사보고서의 대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지불	· 분기별 투자중개업자 점검 및 대량 매매시 승인절차

[재무위험관리사 1과목 6단원 **장외파생상품회계** 완벽 핵심정리]

1.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 원가. 증분 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함

2.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ex: 채무자를 위한 지급보증)

3. **위험회피비율**(= $\frac{\text{위험회피 수단의 수량}}{\text{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수량}}$)상대적인 가중치로 표현되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각각의 **수량** 사이의 관계(ex : 변동금리 차입금 100원에 대해 이자율 상승 위험을 회피하고자 70원의 이자율스왑을 체결하였을 때 위험 회피 비율은 70%임)

4.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

5. **확정 계약**: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

6. **예상 거래**: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

7. 금융자산의 분류(3가지)

<A>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 : 아래 2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 계약상 현금흐름(원금+이자)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C>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AC) : 계약상 현금흐름(원금+이자)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8. 금융부채의 분류(3가지)

<A>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ex) 파생상품부채
<C> 기타의 금융부채: ex) 금융보증부채, 지속적관여부채

9. 파생상품의 정의: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 최초 계약 시 순 투자금액이 0이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미래에 결제된다.

10. 내재 파생상품이란? 특정 계약이 그 자체로서는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의미함. Ex)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 인수권주사채의 신주인수권

11. 복합계약=주계약+내재파생상품

12. 상기 식에서 주계약이 금융자산일 경우: 내재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에 대해 금융자산의 분류기준(FVPL, FVOCI, 상각후원가)을 적용한다

13. 상기 식에서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닐 경우: 원칙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처리함.

- ① 내재 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② 내재 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③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4.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내재 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음.

15.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례

-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할 이자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는 이자율이나 이자율 지수가 기초 변수인 내재 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복합상품을 발행할 때 이자율 상한이 시장이자율 이상이고 이자율 하한이 시장 이자율 이하이며, 이자율 상한이나 하한이 주계약에 관하여 레버리지 되지 않았다면 채무상품에 내재된 금리 상한이나 금리 하한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주계약인 채무상품(예:이중통화 회사채)에 포함된 내재 외화파생상품으로서 외화로 표시된 일련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재 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6.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내재 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함.**

17.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례

-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지분이나 일반상품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변동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당해 금융상품을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재풋옵션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 채무상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나 자동연장조항은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지분연계 이자 또는 원금 지급계약은 이자나 원금이 지분상품의 가치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은 위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18. 기업이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원칙) 최초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시점에만 내재 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즉, 최초 계약시점에만 검토함) **(예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내재 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재검토함

19. 파생상품의 최초 측정(취득원가)은 어떻게 할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단, 취득 시 거래원가(ex: 취득 수수료 등)가 발생할 경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즉, 거래원가는 비용처리함

20. 파생상품의 보유기간 중 측정은 어떻게 할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즉, 최초 취득시 취득원가(공정가치)와 차이가 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이익 발생시> (차) 파생상품자산	100	(대) 파생상품평가이익	100
<손실 발생시> (차) 파생상품평가손실	100	(대) 파생상품부채	100

21. 위험회피 회계란? 위험회피 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회피 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및 위험회피 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 방법**을 의미함

22. 위험회피 수단이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or 비파생금융부채)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손익변동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비효과적인 매도 옵션의 경우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23. 위험회피 대상의 예:

- 하나의 자산,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해외사업장 순투자자의 집합

24. 위험회피 회계의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 관계에서만 적용 가능

- 위험회피 개시 시점에 위험회피 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①위험회피 수단 ②위험회피 대상항목 ③회피 대상 위험의 특성과 위험회피 관계가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포함
- 위험회피 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 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 ㄱ.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ㄴ.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 ㄷ. 위험회피 비율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수량과 수단의 수량 비율

25. 공식적 문서화

- 위험회피 관계 등을 개시 시점에 문서화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위험회피 관계를 소급적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위험회피 관계의 지정은 위험회피 관계에 필요한 문서화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함
- 위험회피 개시 시점에서의 지정이 반드시 위험회피 수단을 개시 시점에 위험회피 수단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 파생상품의 계약 체결 시점 이후에 파생상품을 위험수단으로 지정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 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도 위험회피 회계는 문서화가 완료된 시점 이후로만 적용이 가능함

26.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같은 위험, 즉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두 변수간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경제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움

27. 신용위험의 효과

- 위험회피 회계모형은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손익이 서로 상계되는 일반 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위험회피 효과는 이 항목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가치에 신용위험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 신용위험의 효과는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더라도 **상계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것은 위험회피 수단이나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신용위험의 변동이 매우 커서 신용위험이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영향이 지배적인 경우에 발생함
- 지배적인지를 결정하는 규모의 수준은 위험회피 수단이나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가치에 기초변수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압도하는 것을 의미함

28.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의 유형(3가지) : 기존 자산/부채의 미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함.

- 기존 자산/부채에 대한 이자율 성격 변경(**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기존 자산/부채의 가격 변동 위험 위험회피
- **확정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위험 위험회피

29.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의 요약

구분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회계불일치 여부
일반회계 적용	· 공정가치 변동 미인식 or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인식	·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 인식	불일치
위험회피 회계 적용	· <u>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u>	·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 인식	일치

일반회계 적용 시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FVOCI인 경우에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위험회피 대상항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30.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유형(3가지) : 기존 자산/부채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을 헷지하기 위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함.

- 기존 자산/부채에 대한 이자율 성격 변경(**변동금리 → 고정금리**)
- 기존 자산/부채의 이자 현금흐름 고정
- **예상 거래**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 위험회피

31.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의 요약

구분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수단	회계불일치 여부
일반회계 적용	· 미인식	·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 인식	불일치
위험회피 회계 적용	· Min(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수단의 손익누계액)을 관리만 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음	· <u>효과적인 부분</u> →OCI · <u>비효과적인 부분</u> →당기손익	일치